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 [Korean]

제정안 관련 공청회 및 의견 개진 기회 통지

개정 공고된 규정은 어떤 것입니까?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은 “긴급 식품 제공자를 위한 식품 배급 및 관리 자금 지원”이라는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긴급 식품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HRA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긴급 식품 제공자에게 식품 및 관리 자금을 유연하게 할당하여 지역사회의 식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는 언제, 어디서 진행됩니까? HRA는 개정 공고된 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이 공청회는 2022년 8월 12일, 10:00 AM에 줌을 통해 원격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이 공청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줌 (영상 및 음성):

<https://us02web.zoom.us/j/85469930699?pwd=-zCjaaw6YqJfZHeu51DXAulTkbCHgg.1>

또는 www.zoom.us를 방문해 "미팅 참여(Join a Meeting)" 클릭한 뒤, 미팅 ID 854 6993 0699를 입력하십시오. (패스코드: DSS)

전화(음성만):

+1 646 876 9923 미국(뉴욕)
미팅 ID: 854 6993 0699

개정 공고된 규칙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음의 방법으로 개정 공고된 규정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NYC 규정 웹사이트(<http://rules.cityofnewyork.us>)를 통해 HRA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의견서를 NYCRules@hra.nyc.gov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목에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긴급 식품 지원 프로그램) 또는 “EFAP”를 포함하십시오.
- **우편.** 다음 주소로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HRA Rules
c/o Office of Legal Affairs
150 Greenwich Street, 38th Floor
New York, NY 10007

EFAP 규정 관련 의견 제시임을 본문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917-639-0413번으로 의견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 “EFAP”를 포함해주시시오.
- 공청회에서 발언. 929-221-7220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2022년 8월 12일 당일 또는 그 전에 NYCRules@hra.nyc.gov로 이메일을 통해 공청회 의견 개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순서대로 발언자를 호명하며 최대 3분까지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이 있습니까? 의견서 제출 마감일은 2022년 8월 12일입니다. 우편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포함해 모든 의견서는 2022년 8월 12일까지 HRA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공청회 참석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공청회에서 위한 적절한 편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NYCRules@HRA.nyc.gov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929-221-7220번으로 전화하여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하셔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2022년 8월 5일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공고된 규정과 관련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웹사이트에서 개정 공고된 규정에 관하여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http://rules.cityofnewyork.us/>. 공청회 후 수일 내에 개정 공고된 규정과 관련하여 온라인에 제출된 모든 의견, 서신으로 제출된 모든 의견, 모든 구두로 전달된 모든 의견의 사본이 HRA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됩니다.

본 HRA 제정안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뉴욕시 헌장 603절과 1043절, 뉴욕사회보장서비스법(New York Social Services Law) 34절에 따라 HRA는 해당 개정 공고된 규정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HRA 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HRA 규정은 뉴욕시 규정(Rules of the City of New York) 제68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이 HRA 규정 의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해당 규정은 HRA가 가장 최근의 규정 의제를 발표할 당시에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규정 제정 과정은 어떤 법률을 따릅니까? 신규 제정 또는 개정 시 HRA는 반드시 뉴욕시 헌장 제1043조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 공지사항 역시 뉴욕시 헌장 제1043조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제정안의 근거 및 목적

뉴욕시 사회복지부(DSS)/인적 자원 관리국(HRA)은 “긴급 식품 제공자를 위한 식품 및 관리 자금 지원”이라는 뉴욕 시 규정 68번 4장을 폐지하고 “긴급 식품 지원 프로그램”(EFAP)이라는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HRA는 제정안을 통해 긴급 식품 제공자에게 식품 및 관리 자금을 유연하게 할당하여 지역사회의 식품 수요에 계속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은 긴급 식품 제공자에게 자금을 할당하는 HRA의 현재 방식을 대체합니다. 현재 방식은 전년도 지원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새로운 방식은 특정 지역과 특정 인구 내의 현재 식품 수요를 포함한 여러 요인을 고려합니다. HRA는 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금 배급 방법을 갱신하여 제공자의 의견과 도시의 급변하는 긴급 식품 수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과 자금 지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HRA은 새로운 규정을 통해 비영리 단체의 인프라와 운영 비용을 환급하고, EFAP 자금 지원 방법을 모색하면서 기존 긴급 식품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장하는 새로운 긴급 식품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DSS의 법적 근거는 뉴욕 시 헌장 제603조 및 제1043조, 뉴욕 사회복지법 제34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공고된 규정

제1조. 긴급 식품 제공자에 대한 식품 배급 및 관리 자금 지원과 관련된 뉴욕시 규정 제68조, 제4장은 폐지하며 다음과 같이 새로운 4장을 추가한다.

4장

긴급 식품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 4-01 정의. 본 장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a) "국장"은 DSS 국장 또는 국장의 피지명자를 의미한다.

(b) "DOHMH"는 뉴욕 시 보건 및 정신위생국을 의미한다.

(e) "EFAP"는 본 장에서 기술한 긴급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d) "긴급 식품 프로그램"은 소득이 부족한 사람에게 고정적인 위치 또는 이동 장치를 통해 식품을 제공하여 즉각적인 식품 수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긴급 식품 프로그램"은 현장 또는 외부에서 섭취하는 식사나 현장에서 준비하여 섭취하는 형식으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e) "식품 제공자" 또는 "제공자"는 긴급 식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f) "HRA"는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을 의미한다.

§ 4-02 프로그램 관리.

HRA는 본 장에 따라 긴급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여 기존 식품 제공자에게 식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HRA는 자금 지원 가능 여부에 따라 식품 제공자에게 EFAP를 통해 공급된 식품의 유통과 관련된 비용을 환급하고, EFAP 식품 제공자 또는 EFAP 식품 제공자가 되려는 기타 비영리 단체가 관리 능력을 확립하거나 확장하고, 지원 수를

늘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긴급 식품을 제공하도록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4-03 EFAP 자문 그룹(EFAP Advisory Group).

EFAP 프로그램 관리자는 뉴욕시 긴급 식품 프로그램 관리와 관련이 있거나 참여하는 구성원으로 EFAP 자문 그룹을 선정해야 한다. EFAP 자문 그룹 구성원은 자발적으로 보상 없이 EFAP 프로그램 관리자를 위해 활동한다. EFAP 자문 그룹은 최소 6개월마다 소집되어야 하며, HRA에 식품 제공 및 배급 서비스를 포함한 긴급 식품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을 권고해야 한다.

§ 4-04 식품 제공자 인증서.

(a) HRA는 본 장에 따라 EFAP 식품의 할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증된 식품 제공자 목록을 보관해야 한다.

(b) EFAP 식품 제공자로 인증받으려면 제공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 HRA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제공자는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 501(c)(3)에 따른 비과세 자격에 해당해야 한다.

(2) 제공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개별 부분 서비스를 위해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 또는 외부 섭취 여부에 관계 없이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허가하는 유효한 DOHMH 요식업 허가를 보유해야 한다.

(3) 제공자는 HRA에게 4-05절에 명시된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는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할 경우, 기타 공급원으로부터 받는 식품과 관련하여 4-05절 (a)~(p)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c) EFAP 식품 공급자 신청은 HRA가 지정한 방식으로 한 번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절차에는 HRA의 현장 방문이 포함된다. HRA는 재량에 따라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인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 대한 신청 절차를 시작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d) 공급자의 신청이 승인된 경우, 공급자는 4-05절에 명시된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하기로 동의하는 공급자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HRA는 승인된 공급자가 서명한 공급자 계약서를 수령한 후 공급자를 EFAP 식품 공급자로 인증해야 한다.

§ 4-05 프로그램 요건.

공급자는 다음 프로그램 요건에 동의하고 준수해야 한다.

(a) 식품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적 소속/신앙, 성별, 장애, 나이, 외국인 또는 시민권 상태, 혼인 또는 동반자 상태, 임신, 재향군인,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다른 계층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배급해야 한다.

(b) 식품은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 배급은 단체의 구성원으로 제한할 수 없다.

(c) 식품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 활동과 관련하여 배급해서는 안 된다.

(d) 공급자는 HRA가 서면으로 승인한 정기적이고 일관된 일정에 따라 긴급 식품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e) 공급자는 HRA를 제외한 공급원의 식품 및 자금을 신청하고 유지해야 한다.

(f) 공급자는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식품 배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식품, 공급품, 자원봉사자, 공간, 배급 계획 등)을 유지해야 한다.

(g) 공급자는 식품을 찾는 사람이 공급자에게 전달하는 식이 제한 및 음식 알레르기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식사 및 식품 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제공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자치구의 문화적인 선호도를 고려해야 한다.

(h) 식품은 HRA가 허가한 장소에서 DOHMH 요건에 따라 보관, 준비, 제공, 배급되어야 한다.

(i) 제공자는 뉴욕 주 위생 규정(Sanitary Code)에 따라 이동식 식품 서비스 시설로 운영될 수 있는 유효한 허가를 받지 않은 한, 개인 거주지, 가정집, 아파트 또는 차량에 식품을 보관하거나 배급해서는 안 된다.

(j) 식품은 유통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하며, 거래,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

(k) 제공자는 유통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식품을 배분하고 유통기한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신선 식품이 포함된 경우, 제공자는 신선 식품을 수령한 그대로 상하기 전에 배분해야 한다. EFAP 식품이 상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제공자는 폐기 전에 HRA에 통지해야 한다.

(l) 식품은 다른 단체에 하위 배분되어서는 안 된다.

(m) 식품을 받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

- (1) 기부,
- (2) 식품비 지급,
- (3) 음식에 대한 서비스 교환,
- (4) 종교 또는 정치 활동 참여 또는
- (5) 긴급 식품을 받기 위한 증빙 서류 제출.

제공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1) 모든 EFAP 식품의 수령 및 배급을 문서화한 기록을 보관한다.
- (2) EFAP 식품의 배분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문서화한 영수증을 보관한다.

(3) 모든 기록은 해당 연도가 끝나는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고, HRA 직원이 기록을 검사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4) 식품 수령 및 배급 기록 사본을 배급 현장에 보관한다.

(5) 도난, 기물 파손 또는 기타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지 경찰 및 HRA에 알린다.

(6) EFAP 식품을 수령하고 배급하는 데 필요한 허가 및 라이선스를 유지한다.

(7)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EIN) 및 비과세 자격에 대한 IRS 확인서 파일을 보관한다.

(o) 제공자는 HRA가 수용할 수 있는 지원 인원수에 대한 회계 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p) 제공자는 HRA가 지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지원 인원수에 대한 월별 데이터 및 HRA가 요청할 수 있는 기타 통계 정보를 포함한 정확한 월별 통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q) 제공자의 업무 일수와 시간은 311과 공유해야 하며, 제공자는 311이 현장에 지정한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r) 제공자는 HRA가 수신하여 제공자에게 통지하는 불만 사항에 대응해야 한다.

(s) 제공자는 본 장에 따라 HRA 직원의 현장 방문을 허가해야 한다.

(t) 제공자는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또는 모든 후속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HRA가 수용할 수 있는 형식과 방법으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u) 제공자는 임시 또는 영구적인 폐쇄 또는 운영일 및 시간 또는 식품의 보관 또는 배급 위치를 변경하기 전에 HRA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제공자는 연락처의 모든 변경을 HRA에 적시에 알려야 한다.

(v) 제공자는 본 장에 따라 수령한 관리 자금을 다른 기관 전체 또는 일부를 상환한 지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w) 제공자는 노인 복지 센터 또는 비거주용 치료 프로그램과 같이 특정 인구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정부 계약을 통해 제공된 자금을 대체할 목적으로 본 장에 따라 수령한 식품 또는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x) 제공자는 EFAP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HRA에 협력해야 한다.

§ 4-06 식품 할당 및 수정.

(a) HRA 또는 HRA의 피지명자는 자금 지원 가능 여부에 따라 매년 한 번 이상 인증된 EFAP 식품 제공자에게 신용 한도 형태로 식품을 할당해야 하며, 제공자는 이를 통해 HRA 계약 공급업체의 식품을 이용할 수 있다. 각 제공자의 식량 배급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지역사회 수요, 제공자의 역량, 제공자의 이전 성과, 인증 포용성 및 형평성이 포함된다.

(b) HRA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식량 배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월별 통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출한 월별 통계 보고서가 부정확한 경우,

(3) 공급자의 EFAP 상태가 활성화에서 보류 또는 폐쇄로 변경될 경우,

(4) 제공자의 할당 축소 요청,

(5) EFAP가 일반적으로 충족하도록 의도한 수준 이상의 긴급 식품 수요(예: 화재, 비상 사태 또는 공중 보건 비상 사태로 인한 수요),

(6) EFAP 자금 지원 감소 또는

(7) 인구통계학적 변화, 인구통계학적 예측 변화 또는 특정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품 프로그램의 가용성 변화.

(c) EFAP 식품 제공자 인증은 본 절에 따른 식품 할당 수량을 보장하지 않는다

§ 4-07 식품 배급 관련 비용 환급.

유틸리티, 식품 배급, 보관 및 준비 관련 장비, 식품 서비스 제품, 수리, 인력 등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때 제공자가 EFAP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HRA는 자금 지원 가능 여부에 따라 EFAP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되는 식품 제공의 합리적인 비용을 EFAP 식품 제공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식품 제공자는 HRA이 지정한 방식으로 이와 같은 환급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식품 제공자는 이미 다른 자금 출처로 조달한 비용에 대해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

§ 4-08 역량 강화 교부금.

HRA는 자금 지원 가능 여부에 따라 재량으로 긴급 식품 프로그램을 확장하고자 하는 인증된 EFAP 식품 제공자 또는 본 장의 요건을 충족하며 긴급 식품 프로그램을 수립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에 교부금을 제공할 수 있다.

§ 4-09 식품 제공자 모니터링 및 연례 재인증 심사.

인증된 EFAP 식품 제공자는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프로그램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HRA 연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연간 재인증 심사에는 본 장에 따라 식품 할당을 받는 제공자에 대한 연간 한 번 이상의 현장 방문이 포함된다. 제공자가 프로그램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HRA는 제공자의 식품 할당을 축소, 유예 또는 종료하거나 EFAP 식품 제공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HRA는 제공자의 식품 할당을 축소, 유예 또는 종료하거나 EFAP 식품 제공자 인증을 취소하기 전, 제공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여 서면으로 반박할 기회를 제공한다.

§ 4-10 철회한 식품 제공자 인증서 복원.

4-09절에 따라 EFAP 식품 제공자 인증이 취소된 식품 제공자는 HRA가 지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인증서가 복원될 경우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할 것임을 입증하여 인증서 복원을 신청할 수 있다.

NEW YORK CITY LAW DEPARTMENT
DIVISION OF LEGAL COUNSEL
100 CHURCH STREET
NEW YORK, NY 10007
212-356-4028

현장 §1043(d)절에 따른

인증서

규칙 표제: 긴급 식품 지원 프로그램 규정

참조 번호: 2021 RG 038

규정 제정 기관: 인적 자원 관리국

본인은 이 사무국이 뉴욕시 현장 1043(d)절에 따라 상기 참조된 개정 공고된 규정을 검토하였음을 인정하며 상기 참조된 개정 공고된 규정에 대해 다음을 확인합니다.

- (i) 법 조항을 인가받기 위해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 (ii) 기타 관련 규정과 상충하지 않습니다.
- (iii) 실행할 수 있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좁은 범위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 (iv) 실행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규정의 명확한 내용을 설명하며 해당 규정이 부과하는 요건에 대한 근거와 목적을 밝히는 진술문을 포함합니다.

/s/ STEVEN GOULDEN
뉴욕시 변호인 대행

날짜: 2022년 4월 1일

NEW YORK CITY MAYOR'S OFFICE OF OPERATIONS
253 BROADWAY, 10th FLOOR
NEW YORK, NY 10007
212-788-1400

현장 1043(d)절에 따른
인증서/분석

규칙 표제: 긴급 식품 지원 프로그램 규정

참조 번호: HRA-31

규정 제정 기관: 인적 자원 관리국

본인은 본 기관이 뉴욕시 현장 제1043(d)조의 요건에 따라 상기 참조된 제정안을 분석하였으며, 상기 참조된 제정안에 대해 다음을 확인합니다.

- (i)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개별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들이 이해할만한 내용이며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 (ii)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개별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들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 (iii) 본 제정안은 위반과 관련된 위반, 위반사항의 변경 또는 위반사항 처벌의 변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유예 기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s/ Francisco X. Navarro
뉴욕시 시장 운영실

2022년 6월 2일
날짜